



대구경북지방병무청

수신자 수신자참조

(경유)

제목 사회복무요원 수학행위 금지 위반사례 방지를 위한 협조 요청

1. 관련근거

- 가. 병역법 제73조(복학보장 및 군복무 중 학점취득 인정)
- 나. 병역법 제33조(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)
- 다. 병역법시행령 제65조의5(임무수행 태만 등의 범위)

2. 사회복무요원은 복무 중 학교에서 수학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, 관련 법령 인지 부족 등으로 복무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병무청에서는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수학 관련 실태조사를 매 학기 실시하고 있습니다.

3. 이와 관련 각 복무기관은 아래사항에 유의하여 **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**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

- 문서시행 및 교육을 통해 소속 근무지(사회복지시설 포함) 담당자 및 사회복무요원 전원에 대한 복학 관련 주의사항, 위반자 처리 기준 등 안내 철저
- 복학신청용 '사회복무요원 복무확인서' 발급시 연가기간(시작일자~종료일자)을 반드시 명시하여 발급

○ 대학(원) 등 교육기관

- '사회복무요원 복무확인서'상 복학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복학 비대상자가 복학하지 않도록 조치

붙임 복학사유 연가 사용시 주의사항 및 위반자 처리기준 1부. 끝.

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

전 복무기관의 장, 각 대학의 장



주무관

이상성

복무계획계장

이정애

복무관리과 과장

전결 02/15

임선아

협조자

시행 복무관리과-1057 (2024.02.15.) 접수 수업학적팀-8555 (2024.02.15.)

우 41069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3, 복무관리과 (신서동) / <http://www.mma.go.kr>

전화 053-607-6553 전송 053-607-6560 / lhmscdex@korea.kr / 비공개